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75th December 2014

- ▶ WHERE IS GRACE CHANG?:
마중물2
- ▶ ABOUT WRITERS2
- ▶ COVER STORY: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3
- ▶ FTA NEWS:
TPP(TRANS-PACIFIC PARTNERSHIP)의
발자취와 타결전망5
- ▶ VOICES FROM THE FIELDS:
지역파견 FTA 전문 관세사가 느끼는
현장의 소리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9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㉞11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마중물



장승희
대표 관세사

펌프로 물을 길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수동 펌프로 말입니다. 예전에 수도시설이 부족하던 때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많은 집에서 펌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른 펌프로부터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 한 바가지를 넣고 펌프질을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물을 퍼올리기 위해 먼저 마중을 나가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2014 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가고 있다는 아쉬움이 밀려 듭니다. 긴 겨울방학기간동안 다하지 못한 숙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개학일은 코 앞으로 하루하루 닥쳐오던 그때의 심정입니다.

연초에 기대했던 긍정적인 경제성장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기업투자는 위축되었고 개인의 소비심리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성장 기조를 이어오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등으로 특징되는 뉴 노멀(New Normal)의 축소균형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 합니다.

길을 잃어 사막을 헤매던 사람이 우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우물에는 펌프가 있었고 물 한 바가지가 안내장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마중물을 넣고 펌프에서 물을 퍼올리십시오. 마신 후에는 반드시 마중물 한 바가지를 받아 놓으십시오.'**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였던 헬렌 켈러는 펌프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손으로 만지며 그것이 앤 설리반 선생이 가르쳐 주는 w-a-t-e-r 임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어둠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온 헬렌 켈러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 교육자,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마중물이 되어준 설리반 선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5 년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만이 가득합니다. 경기 회복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새해를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마중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이 마중물이 되어 IMF 를 빨리 벗어날 수 있었듯이 저 깊이 담겨있는 우리의 힘을 끌어내기 위하여 마중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7 살 어린 소녀를 깨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앤 설리반 선생같이, 인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같이 **내가 먼저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바닥에 맑고 힘찬 물이 쏟아지는 그날까지... 건승을 기원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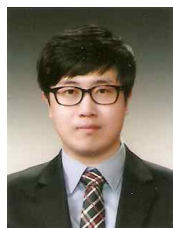
최혜지 관세사
(hj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본부 통관 3 팀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수출입통관, FTA 및 AEO 컨설팅 수행

FTA News-

TPP(Trans-Pacific Partner ship)의 발자취와 타결전망



서경덕 관세사
(kd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IBM 파견팀 팀장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컨설팅 경력다수

Voices From The Fields-

지역파견 FTA 전문 관세사가 느끼는 현장의 소리



김복술 관세사
(bs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 본사 컨설팅본부 FTA 파견팀
- 대구 FTA 활용지원센터
- FTA 원산지 컨설팅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유입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컨설팅 경력다수

RULINGS ©

디자인비에 대한 실제지급 가격 가산 여부 (HQ H012412. 2007. 10. 16)



이길준 관세사
(gi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컨설팅 2팀
- FTA 컨설팅 경력다수

Cover Story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1. 개요

2010 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 10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BS,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이하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우루과이가 50 번째로 비준함으로써 지난 10 월 12 일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책임기관에 신고하고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며,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 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 월 14 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켰다.

2.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

(1) 나고야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은 "첫째 생물다양성의 보존, 둘째 지속 가능한 이용, 셋째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세 가지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이 중 세 번째 목적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의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나고야 의정서는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유전자원의 접근 시 사전통보 승인을 받을 것과 이익공유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 주요 내용〉

- (접근) 자원보유국의 사전통보승인(PIC) 취득 필요
- (이익공유) 자원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공유
- (의무준수)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규정마련, 모니터링 실시
 - ※ 적용시점은 의정서 발효 이후이며, 접근 및 이익공유 대상자원은 생물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토착지역사회의 전통지식

* PIC(Prior Informed Consent), MAT(Mutually Agreed Terms)

[출처 :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산업계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 생물 유전자원의 범위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유전자원이란 종자, 천연물 신약 및 화장품 등 인류를 위해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되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이에 더하여 유전자원의 파생물과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까지 유전자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p>시간적인 범위</p> <p>소급적용이 논점이 되고 있는데 최종 채택된 의정서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 협약법에 관한 빈 조약에 의하여 나고야의정서가 소급 적용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p>	<p>공간적인 범위</p> <p>공간적으로는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상품(COMMODITIES)</p> <p>통상적인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상품에 포함된 유전자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정서상의 PIC, MAT 요건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p>
---	---	--

[출처 : ABS 산업지원센터, <http://www.abs.kr>]

3. 국내업계에 미칠 영향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의약, 화장품, 건강식품산업 등 생물 유전자원을 원자재로 하는 산업의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에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주요 수입국인 중국, 미국, 호주 등은 아직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준국이 증가하는 경우를 위해 관련 기업은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대응방안

(1) 이익공유 방식의 결정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이익의 공유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적인 방법으로서의 이익 공유가 부담이 된다면 자원 제공자와의 협의에 의해 기술이전·연구 성과의 공유 혹은 교육 등 비금전적인 요소로 지불할 수 있다.

(2) 대체자원의 개발

해외 유전자원 외에 국내의 자원이나 대체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조달 가격,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정보 수집

나고야의정서는 일반적인 협약이나 의정서와 달리, 생물자원 제공국의 국내법에 현지 외 효력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자원제공국의 국내법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생물자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자원제공국의 적용 법령이나 동향을 미리 파악해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와 같은 온라인 인프라를 미리 파악해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혜지

hjchoi@customsservice.co.kr

ABS 산업지원센터	http://www.abs.kr
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http://www.cbd-chm.go.kr
국가자연사종합연구시스템	http://naris.go.kr

TPP(Trans-Pacific Partnership)의 발자취와 타결전망

1. TPP와 참여국

TPP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말하며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와 노동규제, 금융 등의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자유화 협정이다. 초기 창설 당시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나, 미국의 참여 이후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10월달에 각료회의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그림 3> TPP 협상 참가국의 개요

섭적달리, 달러, %	GDP	1인당GDP	국제수지/GDP	FTA 체결현황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미국	16,244.6	51,704	(2.7)	-	X	O	X
일본	5,960.0	46,707	1.0	X	-	협상중	X
캐나다	1,821.4	52,300	(3.4)	O	협상중	협상중	X
호주	1,541.7	67,304	(3.7)	O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뉴질랜드	169.8	38,255	(5.0)	TPP	X	협상중	O
칠레	268.2	15,410	(3.5)	O	O	O	O
멕시코	1,177.0	10,059	(1.2)	O	O	협상중	X
페루	198.9	6,525	(3.6)	O	O	O	O
브루나이	2.5	282	(17.5)	X	O	X	X
말레이시아	304.7	10,345	6.1	TPP	O	X	X
싱가포르	276.5	52,052	18.6	O	O	O	O
베트남	155.6	1,753	5.8	O	O	X	X

[표 1] TPP 참여국¹

2. TPP 각료회의 개최 및 타협점

TPP는 총 20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다. 2010년 3월 제1차 협상 시 2014년 5월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각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분야가 많아 각료회의와 더불어 목표시한은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으로 연기하였다.

¹ TPP 협상 참가국 개요, IMF, 산업통상자원부, 현대리서치센터

실제로는 2014년 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29개의 장 중 20개의 타협점을 찾았지만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등에서 미해결 이슈가 잔존하였기에 앞으로의 방향을 견잡을 수 없었던 상태였다. 이후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12개국의 정상에 참여한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였다.

회의의 주된 내용도 앞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지적재산권, 국유기업 개혁, 시장개방 문제 등 협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슈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품목별 시장개방등의 의견차이로 인해 무산돼 결국에는 이달 APEC 회담 이후에 모든 것을 미루어 체결전망은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3. 결론

최근 한-중 FTA 타결에 따라 나머지 타결해야 될 협정과 앞으로 미국의 대외적인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다. TPP는 미국이 아시아국가들을 참가시켜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큰 만큼 더 이상 늦추지 않고 11월 말 APEC 회의 이후 협상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미국과 일본의 의견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TPP가 어느 시점에 체결이 되느냐 보다는 앞으로의 남은 타결 포인트와 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영훈
[\(kimyh@customsservice.co.kr\)](mailto:kimyh@customsservice.co.kr)

1차	2010년 3월 15일 ~ 19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2차	2010년 6월 14일 ~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3차	2010년 10월 5일 ~ 8일	브루나이
4차	2010년 12월 6일 ~ 1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5차	2011년 2월 14일 ~ 18일	칠레 산티아고
6차	2011년 4월 24일 ~ 5월 1일	싱가포르
7차	2011년 6월 15일 ~ 24일	베트남 호치민
8차	2011년 9월 6일 ~ 15일	미국 시카고
9차	2011년 10월 22일 ~ 29일	페루 리마
10차	2011년 12월 5일 ~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1차	2012년 3월 2일 ~ 9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12차	2012년 5월 8일 ~ 18일	미국 델러스
13차	2012년 7월 2일 ~ 10일	미국 샌디에이고
14차	2012년 9월 6일 ~ 15일	미국 리스버그
15차	2012년 12월 3일 ~ 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16차	2013년 3월 4일 ~ 13일	싱가포르
17차	2013년 5월 15일 ~ 24일	페루 리마
18차	2013년 7월 15일 ~ 25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19차	2013년 8월 23일 ~ 30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20차	2014년 7월 3일 ~ 13일	캐나다 오타와

[표 2] TPP 진행 경과

TPP 주요 협상 분야		
상품시장 접근	금융서비스	노동
농업시장 접근	통신	환경
섬유 및 의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통관절차	임시입국	협력과 능력배양
원산지 규정	지식재산권	규제조화
무역상 기술 장벽	정부조달	경쟁력과 공급망
위생검역	경쟁/국영기업	개발
서비스	무역구제	중소기업
투자	투명성	...

[표 3] TPP 주요 협상 분야²

² Click 경제교육. 2014년 9월호,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Voices From The Fields

지역파견 FTA 전문 관세사가 느끼는 현장의 소리

파견업무의 동기와 초창기 애로 사항

2년 전 지인으로부터 퇴직자 중 FTA 상담업무를 담당할 분을 찾고 있다는 문의가 들어왔다. 그 순간 내가 그 업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FTA에 관련한 책자와 자료를 모으며 공부를 시작하였다. 퇴직 후에는 나도 꼭 한번 도전해 보리라 생각하면서...

그 후 대구지역에 FTA 상담관세사 한자리를 더 늘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기회만 되면 명예퇴직을 하리라 마음먹고 있던 차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신한관세법인에서 일하게 되었다. 용기를 내어 도전을 했지만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처음 3-4개월은 기업에 무슨 상담을 해드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산업통상부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상담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분야별로 상세하게 규정을 한번 더 훑어보면서 하나하나 업무를 익혀 나갔다. 아직도 많이 서툴지만 관세사란 전문가에 흠이 될까 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현장컨설팅에서의 느낀점

처음 컨설팅 요청이 있었던 회사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준비 중인 기업체로 설렘과 기대를 안고 회사를 방문하였다. 대표님과 수출물품의 설계도를 보면서 원재료와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등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해 상담을 해준 회사로 관심이 많이 갔는데 계약이 무산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내수에서 수출의

기회를 넓히려는 CEO의 의지가 꺾여서 안타까웠다 또 다른 기업의 경우는 세탁기 부분품을 생산하여 국내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였다. 최종 제품을 삼성, 대우, LG전자에서 세탁기를 수출하고 있어 전체 FTA 체결국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상담하였다. CEO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는 등 적극적인 기업체로, 여러 번 메일을 주고받으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요즘도 가끔씩 안부 메일을 보내면 꼭 답장을 해주신다.

또 다른 기업체는 간단한 농기계를 생산하며 샘플로 1대를 수출 후 상대국에서 3대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회사였다. 전화로는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기름때와 쇠파리가 묻어 있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CEO를 보고 내심 놀랐으며, 존경스럽기까지 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산업 일꾼들 덕분에 우리가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수출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원재료 명세서는 메일로 받기로 하고 돌아왔다. 서른 개 가까이 되는 부품의 품목분류를 설명도 없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다시 방문하였다. 대표님과 직접 품목분류표와 해설서를 보면서 사전에 검토한 세번과 대조하여 품목분류를 쉽게 결정할 수 있었으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았다.

대구 FTA 활용지원센터의 역할

대구지역센터에서는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FTA 활용교육을 통해 기

업 스스로 FTA 원산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1 : 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세관과 합동으로 상·하반기에 FTA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원산지 전담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대구는 섬유, 안경, 자동차 부품, 철강, 각종 기계류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중견그룹 이상의 기업체는 이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원산지 전담자를 채용하여 FTA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많은 2차, 3차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FTA 상담은 파견관세사가 할 역할이다. 어려움은 있지만 성취도는 배가 된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던 기업들이 상대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으로 FTA 상담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파견관세사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중국과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면 상담업무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FTA 전문가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수출이 증대되어야 나라가 산다!

파견관세사들이여 오늘도 즐겁게 파이팅!!!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복술
(bskim@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①외국환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 수령 한도, ②자본거래 신고 예외, ③제3자 지급 신고 예외, ④상계 신고예외 등의 기준금액을 현행 건당 1천불→2천불로 확대

나. 지역 농·수협에서도 외화송금 허용(연간 3만불 이내)

다. 환전영업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 동일자·동일인 기준 2천불 미만의 외화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라. 누계 50만불 이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을 변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마.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의 경우 물품 수령 1년 이전에 200만불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 없이 허용

바. 제3자 지급 신고부담 완화

- 정형화 보편화된 거래의 경우 신고 없이 3자 지급·수령 허용
- 2천불 ~ 1만불 이하의 제3자 지급의 경우 은행 신고로 완화

3.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

「관세법 제 226 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1. 개정 사유

통관규제 정비를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통관규제를 완화 등 세관장확인 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사회안전을 위한 신규 품목지정 및 기존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고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① 우수기업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운영방법 개선

[기업별 차등운영방안 도입]

AEO, 보세공장 등 기업별 자체 법규준수도가 높고 사실상 국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인 경우 통관단계의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요건확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체제로 전환

* 요건확인기관과 합의한 법령 및 물품에 한해 적용

[중소기업 자율확인제도 도입]

중소기업 중 사전신청을 통해 일정 법규준수도가 높은 경우 AEO기업에 준하여 통관단계의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요건확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

* 요건확인기관과 합의한 법령 및 물품에 한해 적용

②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한 품목 추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캠핑문화 확산 등 가스용기의 소비자 이용증가에 따라 가스용기의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추가(HSK5개품목)

③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반영

[수입]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3월)*에 따라 전자저울 품목 삭제(HSK7개품목)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외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8월)에 따른 요건확인 대상 냉장고의 Compressor 규격기준 변경(1KW이하→10KW이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요건확인 대상 품목인 LED램프의 특개 세번 신설('14.1.1)에 따라 동 세번을 요건확인 대상 세번으로 지정 (HSK3개품목)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검역대상인 생모피 및 동물뿔·뼈의 제조제품을 요건확인 대상에 추가(HSK6개품목)

- 「원자력안전법」의 수출입 요건확인서 명칭 및 대상 품목을 관련규정 및 "통합공고"상 명칭*으로 변경

* 수(출)입허가서 → 수(출)입요건확인서, 방사선동위원소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감사원지적에 따라 「종자산업법」의 약용종자중 오가피 종자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에 "산림청장" 추가

3. 시행일자 : 2014년 11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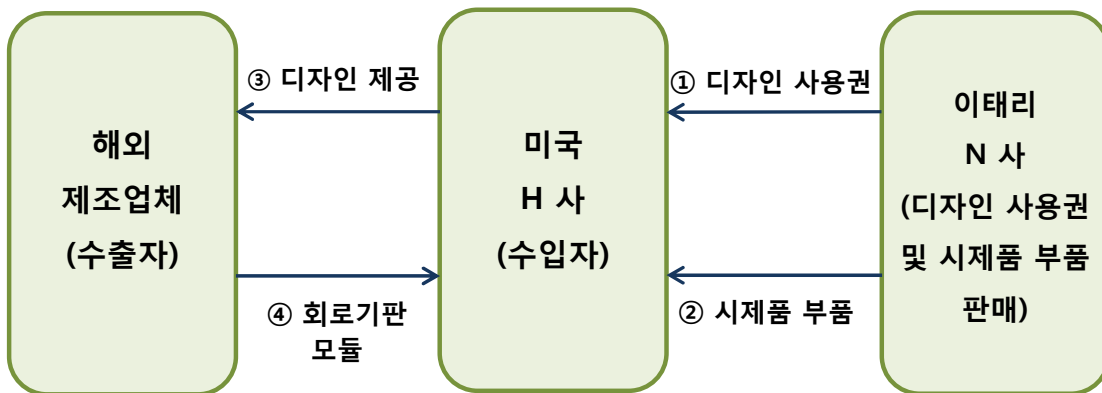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디자인비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가산 여부 (HQ H012412, 2007. 10. 16)

생산지원비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 거래사실(Facts)

- 미국 H 사는 이태리 N 사와 휴대폰의 회로기판에 추가로 또다른 회로기판 모듈을 장착할 목적으로 디자인 계약을 체결, 디자인 사용권을 매입함
- 미국 H 사는 미국 내 공장에서 시제품(Prototype) 보드를 제작하기 위해 이태리 N 사로부터 전자부품을 구매함
- 미국 H 사는 시제품 보드 테스트 이후 미국 H 사, 이태리 N 사와 관련없는 해외 제조업체와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로기판 모듈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디자인을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함
- 해외 제조업체는 해당 디자인에 맞게 회로기판 모듈을 제조하여 미국 H 사에 공급함

□ 쟁점(Issue)

1. 디자인 비용은 생산지원비에 해당되는지?
2. 디자인 비용이 생산지원비라면 이태리 N 사로부터 구매한 시제품 부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회로기판 모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을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실제지급 또는 지급해야 할 가격”에 적절한 생산지원비용을 포함한 법에서 규정한 5 가지 가산요소를 더하여 정한다.(19 U.S.C. 1401a(b)(1)(c))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의미한다.(19. U.S.C. 1401A)

생산지원비는 수입자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iv) 기술, 개발, 도판, 디자인, 도면(미국 이외의 곳에서 설계된 것)에 대해 수출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9 U.S.C. 1401a(h)(1)(A)(iv))

1994 년 4 월 7 일자 HRL 545278 에서 판매자는 비용을 대가로 특정 자동차 엔진에 대한 수정된 디자인 및 개발을 제공 했고, 또한 구매자는 디자인에 따라 수정된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동일한 업체로부터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미 관세청은 구매자가 디자인비용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생산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된 프로토타입 엔진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결정했다.

앞서 사실관계에서 서술된 것처럼, 첫번째 거래에서 이태리 N 사는 회로기판모듈을 디자인하고, 미국 'H'사는 필요한 특정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한다. 이때, 미국 H 사는 디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디자인 작업은 이태리 N 사가 대가를 받고 수행된다. 그러므로, 해당 디자인비는 미국 'H'사가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사용하는 부품과 관련한 생산지원으로 볼 수 없다.

두번째 거래에서, 미국 H 사는 해외의 제조업체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디자인을 제공하고, 제조업체는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여 회로기판모듈을 생산한다. 해당 디자인은 모듈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 후, 회로기판모듈은 미국으로 수출된다. 여기서, 미국 H 사가 제조업체에게 제공한 디자인은 생산지원에 해당하며, 디자인비는 수입되는 회로기판모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 결정(Holding)

위의 두번째 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H'사가 해외 제조업체에게 제공한 디자인은 생산지원에 해당하며, 디자인비는 수입되는 회로기판모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길 준

gjlee@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